

[별표 6] <개정 2012.2.3>

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(제29조 관련)

1. 조직구성

- 가.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, 중부권(대전, 강원, 충남, 충북), 호남권(광주, 전남, 전북, 제주), 영남권(부산, 대구, 울산, 경남, 경북) 등 권역별로 1개 이상의 지부를 설치할 것
- 나. 각 지부에는 법인에 선임된 임원 1명 이상을 책임자로 지정할 것
- 다. 각 지부에는 기술인력 및 시설·장비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

2. 기술인력

- 가. 인원: 강사 4명 및 교무요원 2명 이상을 확보할 것

나. 자격요건

1) 강사

- 가) 소방 관련학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
- 나)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전임 강사 이상으로 재직해 온 사람
- 다) 소방기술사, 소방시설관리사,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사람
- 라) 소방설비기사 및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방 관련 기관(단체)에서 2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
- 마) 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방 관련 기관(단체)에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
- 바)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기관(단체)에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
- 사) 소방 관련 기관(단체)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
- 아)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

2) 외래 초빙강사: 강사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

3. 시설 및 장비

- 가. 사무실: 바닥면적이 60㎡ 이상일 것
- 나. 강의실: 바닥면적이 100㎡ 이상이고, 의자·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추어
- 다. 실습실·실험실·제도실: 각 바닥면적이 100㎡ 이상(실습실은 소방안전관리자만 해당되고, 실험실은 위험물안전관리자만 해당되며, 제도실은 설계 및

시공자만 해당된다)

라. 교육용 기자재

기 자 재 명	규 격	수량	기 자 재 명	규 격	수량
액정비전		1	수압기	20kgf/cm ²	1
빔프로젝트		1	하론농도측정기		1
멀티비전		1	이산화탄소농도측정기		1
비디오 세트		1	전류전압측정기		1
소화기(단면절개)	3종	각 1	검량계	200kgf	1
정보설비시스템		1	풍압풍속계	1~10mmHg(기압측정가능한 것)	1
스프링클러모형		1	차압계		1
자동화재탐지설비세트		1	음량계		1
			초시계		1
소화설비 계통도		1	방수압력측정기		1
소화기 시뮬레이터		1	봉인렌치		1
소화기 충전장치		1	포채집기		1
방출포량시험기		1	전기절연저항시험기	DC 500V(최소누금 0.1MΩ이 하인 것)	1
열감지기시험기		1	연기감지기시험기		1
그 밖의 장비: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8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제2호 장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장비 각 1개 이상					별표